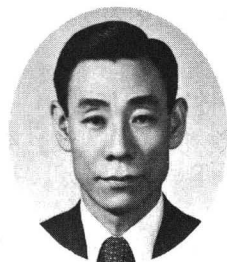


-의료분쟁,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법 테두리 안에서의 문제해결



宋 泰 善
〈국민병원장〉

우리나라 병원들의 경영문제는 요근래 유독 심각하다. 이러한 병원들의 경영악화 원인은 병원운영상의 내부적인 문제에서 낮은 의보수가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의료제도 등 병원계를 둘러싼 수많은 외부적 요인까지 실로 다양하다.

그런데 의료보험 실시 10년이 지나는 동안 병원경영이 지금과 같이 어려워지기까지는 우리나라 병원계 실정에 맞지않는 각종 불합리한 의료제도와 같은 경영외적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의료제도 또 이에따른 병원경영상의 압박 등 병원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병원계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일반국민 즉 환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란 원치않는 사생아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환자들과 의료기관을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줄 의사까지 불신한다면 의료기관과 의사의 어려움은 물론 질병으로부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라는 본질 자체에 문제가 생겨 참된 의료의 빛을 밝히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환자들과 의료기관과의 불신의 여파는 의료의 성격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환자들이 의사들이 시행한 진료의 결과까지 믿지 못하는 풍조로 발전했다.

의사들이 의료를 시행함에 있어 의사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진료노력과 관계없이 만족치 못한 결과도 나오기 마련이다. 의사는 전제전능한 신이 아니기때문이다.

이런 미묘한 상황으로 인해 결국 진료결과가 나쁜 경우 환자측과 의료인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의료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분쟁의 성격도 예전과는 다르다. 과거에도 의료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요즘과 같이 환자가족들이 병원을 점거, 병원진료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병원기물까지 파괴하는 집단난동의 형태는 분명 아니었다.

여기에는 요근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변화의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6·29민주화선언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소외당해왔던 사회계층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는가 하면 또 이들의 의사표현 방식도 달라졌다. 즉 여소야대라는 정적권의 변화속에 민의의 전달방식이 합법적 절차를 통한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기보다

는 집단적 힘을 앞세운 집단시위의 모습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이런 시대적 시류속에서 의료사고를 둘러싸고 발생한 의료분쟁의 양상도 사뭇 달라졌다. 병원 진료실이 환자가족들에 의해 점거돼 병원진료기능이 마비되는가 하면 병원기물이 공권력의 방관속에 파괴됐다.

게다가 환자가족들의 집단시위 성격도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여유조차 주지않고 무조건으로 보상만을 우선으로 했기때문에 법질서가 무시되고 사고를 당한 병원이 또다른 피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는 병원이 당해야 하는 의료사고와는 관계없는 제2의 피해인 것이다.

아름든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의료사고후 뒤따르는 의료분쟁은 환자측과 병원간의 타협으로만 처리되도록 방지할게 아니라 최소한 환자가족들의 집단시위나 난동은 사라질 수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의료분쟁과정 상황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

□질병발생패턴변화에 따른 의료사고의 증가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되면서 심근경색증 심부전증 관상동맥질환 등 심장관련질환이 부쩍 증가, 의료사고의 증가원인으로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심장관련질환들은 EKG나 각종 검사에도 검색되지 않기때문에 적절한 예후판정이 어려움은 물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환자 가운데는 자신의 그런 질병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로 환자측이 환자의 병을 알면서도 의사에게 밝히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의료분쟁에 말려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사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약제실에서 밀가루를 투약해도 죽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인데 이를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같이 최신의료장비로도 검색되지 않는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법적인 차

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부 검

의료사고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순리대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기위해서는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한 일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선 부검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시체는 부패되기 마련이다. 시체를 빨리 부검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부패로 인해 정확한 사인규명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능장을 부려 부검기관지정을 늦게 해 주거나 사망자가족들이 경찰에 압력을 넣어 시체를 부검기관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되면 의료사고를 당한 병원은 시체를 병원에 그냥 놔 둘 수밖에 없어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결국 환자들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도 역시 법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즉 의료사고가 나면 즉시 냉동시설을 갖춘 시체실을 보유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사인규명이 가능해질 수 있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권력

최근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화과정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급부적으로 공권력이 많이 약화된 듯한 느낌이 든다. 요근래는 의료분쟁 발생시 이러한 공권력약화로 인해 병원점거, 병원진료마비, 병원기물 파괴등 무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환자가족들이 이처럼 난동에 가까운 집단시위를 하고 시체까지 옮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정확한 사인규명을 통해 올바르게 시비가 가려질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다. 여기서 더 나아가 환자가족들은 시체를 곁에두고 있음으로 해서 더욱 격해지는 경향까지 있다.

민주화다해서 무법적 탈법적 행위까지 손댈 수 없단 말인가. 이렇게 법을 무시한 파괴적 난동행위에 대해선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확한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 올바른 공권력 행사로 병원을 보호해야 한다.

□의료사고 브로커

의료사고 뒤에는 브로커가 있기 마련이다. 이들 브로커의 형태도 다양하다. 어느 단체에서 환자 가족들을 선동하는 경우에서 의료사고만 뒤쫓아다니는 전문브로커들까지 이들은 가족을 잃어 올바른 이성하에서 행동하지 못하는 환자가족들의 틈을 파고 들어가 마치 병원이 환자를 죽인 것처럼 선동한다.

또 이들은 환자가족들로 하여금 가끔 폭력까지 휘두르는 사례도 있다. 이런 의료사고브로커들은 폭력에 관한 법 내지는 변호사법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볼때 돈받은 증거가 있어야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게 문제다.

앞으로는 돈받은 증거가 있던 없던간에 의료사고와 관련되어 환자가족들을 선동하는 자에겐 무조건 변호사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폭력 및 진료방해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시체보존

앞서 신속한 시체부검의 필요성문제에서도 지적했지만 정확한 부검을 위한 부패되지않는 상태에서의 시체보존이 의료사고해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동시설을 갖춘 기관(혹은 병원)으로 시체를 보관할 수 있도록 「시체보존법」과 같은 법차원에서의 대책이 촉구된다.

□동료의사나 병원의 개입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족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의사나 병원관계자들에게 의논을 하기 쉽다.

이럴때 문의를 받은 의사나 병원인들은 의료사고의 내용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관련법규나 금전적인 해결방법 등을 무심코 알려주기 쉽다. 이것이 환자 가족들로 하여금 사태를 오산케 해 무분별한 행동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의료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선 최소한 확인이란 절차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동료의사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사태는 없어야겠다.

□결 론

의료사고는 환자가족들이나 진료를 직시행한 병원이나 모두 피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의사 어느 병원이 고의로 환자를 죽이겠는가. 그러나 간혹 의료인의 실수로 환자가 죽는 경우도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의료인은 자신의 과오로 인한 경우일 때는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의사가 행한 진료의외의 상황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의사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문제다. 이를 위해선 정확히 시비가 가려져야함은 물론이다.

또 의료계단체에서도 힘을 모아 곤궁에 빠진 동료 의사들을 도와주어야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먼저 법의 테두리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법질서도 정립되어 의료사고로 인해 병원파괴행위나 진료마비는 없어야겠다.*